

일상감사 대상 업무 및 범위

1. 법규 또는 내규(업무처리의 기준이 되는 지침, 예규, 지시, 업무방법서 등을 포함)의 제·개정 및 질의회시
2. 기본사업계획(단위사업계획 포함)의 수립, 변경 및 예산의 편성
3. 이사회 부의안건 및 이사회 결과 보고
4. 부서의 주요 건의 및 요망사항에 대한 조치
5. 교직원의 신규채용, 승진에 관한 사항
6. 직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
7. 소송 및 교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
8. 이사장 또는 총장 결재사항
9. 매 건당 3,0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이나 물품의 제조·구입·임차·용역·시설공사 등의 기본계획 수립, 계약체결 및 계약사항의 변경
10. 매 건당 2,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출결의서, 가지급금 신청 및 정산결의서
(단, 다음에 해당하는 지출은 제외한다.
 -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
 - 세금, 공과금, 공공요금
 - 월정 고정경비
 - 연간단가계약에 따른 지출
 - 조달계약에 따른 지출)
11.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(사전품의서 또는 지출계획)
12. 7일 이상 또는 4인 이상의 해외 출장(연수)계획
13.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